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41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김위상·김은혜·박정하

김소희 • 송언석 • 김선교

우재준 · 임이자 · 박성민

박성훈 · 김형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일선 지방경찰관서는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법률 제 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전단 중 "확인하기 위하여"를 "직접 또는"으로, "요청할 수 있고,"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에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하고"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	범죄경력조회 등)
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u>확인하기 위</u>	<u>직접 또는</u>
<u>하여</u> 관계 기관에 자료를 <u>요청</u>	<u>요청</u>
<u>할 수 있고,</u> 「형의 실효 등에	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에 1회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
경력조회를 <u>할 수 있다</u> . 이 경우	<u>하여야 한다</u>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